외부과제 참여시 연구원 인건비 계상 및 지급기준

1. 정의

– 외부과제 참여 연구원 인건비 : 우리원 소속 연구원이 타 기관 과제에 참여 시 계상하는 인건비

2. 계상 및 지급기준

– 우리원 소속 정규직 연구자 또는 학생이 타 기관 소속 과제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는 외부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함

- 학생 및 계약직 연구원 : 현금 계상 원칙

※ 계상된 정규직 인건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관 계좌로 흡수되어야 하며 계약직 연구원 및 학생의 인건비는 개인계좌 이체 가능함(ITP 제외)

– 과제협약시 혹은 참여율 변경시 '외부과제 참여확인서'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
– 계약직 연구원이 외부과제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총무팀 급여 담당자와 협의 (계약직일 경우 외부과제 미참여 원칙)

3. 내 · 외부 처리 절차

과제책임자		연구관리부서
외부과제 참여 관련 내부결재 상신	➡	외부참여 정보 (참여기간, 참여율, 참여형태 등)확인 후 외부과제 참여확인서 직인 날인 주관기관으로 외부참여연구원 참여현황 및 인건비 지급계획 알림 공문 발송

– 외부과제 참여 관련 내부결재 상신

- 직원 : 연구관리부서를 경유하여 '대학원장' 또는 '연구원장' 전결
- 학생 : 연구관리부서를 경유하여 해당 '전공책임교수' 전결

– 외부과제 참여확인서 제출

※ 각 전담 기관별 별도 양식 활용

04 연구제도

4. 참고자료

– 계상기준

-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 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(현금)계상하되, 개인별 연봉의 100%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

> **〈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(15. 8. 24.) 14p.〉**
> 2.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
> –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,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,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부당집행

※ 적용예외 :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 적용 예외인 산업체 수탁(용역)과제

– 부당집행 사례

- 개인별 연봉의 100%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
-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, 원 소속 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